제945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 (신설) ○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고 이에 해당 업무 영위를 위한 규제 마련 - 설립형태, 존속기간, 출자의무, 최소설립규모, 인가요건마련, 차입허용 범위, 자산운용 허용범위 등 규제를 도입 ▶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,제229조	1.비중요
2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신규 상장법인 분기·반기보고서 제출의무 신설(신설) ○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와 동일하게 직전 분·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 - 다만,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반기·분기보고서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▶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원자력안전법 개정안 (원자력안전위원회)	1.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 제도 도입(강화) ㅇ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체계를 기존 "사업허가 및 지정"에서 "건설허가"로 개편 – 이에 따라, 건설허가에 맞도록 허가 제출 서류를 새롭게 규정하고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신설 ㅇ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체계 개편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한 "지정"을 폐지 ▶원자력안전법 제35조,제36조 2.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 제도 도입(신설) ㅇ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운영허가를 신설 – 이에 따라, 운영허가 규정에 맞게 허가 제출 서류를 새롭게 규정하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 의무화 ㅇ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체계 개편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한 "지정"을 폐지 ▶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4,제39조의5 3.교육훈련 면제대상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제외(강화) ㅇ 방사선기기 사용신고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정기교육훈련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 선임 전 1회 신규교육(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 자격요건)에서 정기교육 이수 의무 부여 ▶원자력안전법 제106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(강화) ㅇ 유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 체계로 일원화, 현행 신고사업을 면허사업으로 일원화 ▶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2.유도선 사업의 시설기준 등(강화) ㅇ 유·도선 사업자가 유지·관리하여야 하는 시설기준에 유·도선장에 대한 기준을 추가 ▶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 3.유도선 사업의 결격사유(강화) ㅇ 현행 유·도선사업의 면허 결격사유 대상이 되는 법률에 선박과 관련이 있는 법률 추가 ▶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6조 4.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(강화) ㅇ 사업 면허의 취소 및 3개월 이내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상 기준* 추가 * △「선원법」,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,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위반시 △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제한 시 운항이 제한된 유·도선을 운항할 시△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 유·도선이 이를 위반하고 조종할 시 ▶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 6.비중요 7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5.유도선 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(강화) ㅇ 유 ·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하는 경우*에 대해 규정 * △5톤 미만의 선박 중 관할관청이 인정 지정하는 유·도선, △외부 갑판에서 낚시 등 활동을 하는 유선, △그 밖에 선장이 기상악화 등으로 필요를 인정하는 유·도선 ▶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 6.유도선 안전관리자(신설) ㅇ 유·도선 업계의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업체 직원 중에서 '안전관리자'를 지정 · 운영토록 규정 ▶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의2 7.출항 입항의 기록관리 등(강화) ㅇ 도선 내에 차량과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 운송 의뢰인의 적재신고서 작성 및 사업자의 확인 의무 규정 ▶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	
5	고등교육법 개정안 (교육부)	1.입학사정관 퇴직 후 취업제한(신설) ㅇ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대상에 '학원' 외에도 "교습소"와 "개인과외교습" 추가 ▶고등교육법 제34조의3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(교육부)	1.입학사정관 학원 설립·운영 결격사유 및 제재처분(신설) ○ 입학사정관으로 퇴직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·교습소의 설립·운영 등록(신고)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처분 ▶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,제17조	1.비중요